

노인복지시설 / 養老院의 現住所

朴 勇 煥

(漢陽大 建築科 教授 · 建築計劃研究室)



I. 머리말

「老人 福祉 分野의 發展 與否는 한나라의 文明의 程度를 가늠케 한다」英國의 「윈스턴·처칠」은 언젠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다.

오늘날 社會 諸分野의 發達과 함께 그 重要性이 強調되어 온 福祉政策은 原來 共產主義 思想의 시작과 함께 그 概念이 形成되었다. 卽 마르크스와 엥겔스에 의해 正립된 共產主義는 그들의 一目瞭然한 理論으로 西方世界에 膨大해 있었던 既存 資本主義를 일대 窮地에 몰아 넣게 되었고, 이에 當황한 資本主義 國家에서는 그들의 最大 弱點인 貧富의 隔差에 대한 補完策으로 社會福祉라는 概念을만 들어낸 것이다.

社會福祉가 이렇게 思想的 背景을 바탕으로 한 것과는 달리 老人福祉分野는 古代「하무라비 法典」의 epilogue에 서도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결코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며, 다만 19세기 産業革命을 起點으로 하여 社會가 점차 産業化, 機能化함에 따라 家族 構成등의 傳統的인 秩序가 무너지고, 老人들이 그들의 役割을 喪失하게 되어 社會의 低辺으로 밀려나게 되었으며, 또한 醫學的인 面 등 諸分野의 發達로 人間의 수명이 점차 늘어나게 됨에 따라 人口의 상당한 部分을 차지하고 있는 이들의 問題가 점차 深刻해졌을 따름이다.

本橋는 우리나라에서도 점차 그 關心度가 높아가고 있는 老人 福祉 分野中 養老院에 關한 것으로, 여러 關係 文獻과 關係者의 意見을 參照하여 記述한 것이며 特히 養老院의 實態에 關해서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서울을 中心으로 실제 養老院을 訪問하여 보고, 듣고, 느낀 것을 바탕으로 하여 기록한 것으로 간혹, 偏見에 의해 事實과 다른 점이 있더라도 너그러운 理解를 바라며, 本橋가 다소나마 이 方面을 理解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II. 養老院의 沿革

「80歲 以上으로서 篤疾 廢疾로 인해 能히 自存할 수 없는 者는 그 所望함에 따라 親疎를 勿論하고 한 사람의 役을 免除하여 護養하도록 許하고 만약 親戚中 護養할 사람이 없을 때는 마땅히 東西大 悲院으로 하여금 모아 安息시키고 公에서 口糧을 支給하고 官員을 보내어 提調토록 하라」. 이는 高麗史에 記録된 것으로 忠烈王 34年 11월에 不遇老人에 對한 施設保護에 該當하는 部分을 一部 拔萃한 것이다.

歴史的으로 살펴볼 때 우리나라의 老人에 對한 對策은 비록 君主에 의한 仁心惠政의 하나로 施惠된 措置에 불과하기는 하나 古代 및 中世에서 이미 그 形態를 찾아볼 수 있으며 高句麗의 故國川王 16年(西紀 194年)에 을파소에 의해 이루어졌던 救恤制度인 賑貸法, 統一新羅時代의 丁田制度등에서도 그러한 것을 볼 수 있으나 具體적으로 오늘날의 養老院의 起原이 될 수 있는 保護施設에 關한 記錄은 이것이 처음이 아닌가 생각한다.

李朝時代의 世宗大王때에는 養老事業이 매우 發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世宗大王實錄에 의하면 世宗 8年 7月 17日에 養老院에 關한 發想과 아울러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養老法의 立法을 下命하였다. 하며, 또한 救護行政에 關한 制度가 經國大典에 集大成되어 體系化 되었고 依託할 수 없는 老人의 收容에 關한 規定도 두었다고 한다.

韓日合併 以後 우리나라는 日本의 支配下에 들어가게 되었고 따라서 老人福祉事業도 역시 朝鮮總督府 施政 二十五年史에 의하면 「1910년에 兩班 儒生의 耆老와 孝子, 節婦의 鄉堂의 模範者와 寡孤獨의 憐愍한 者에게 臨時恩賜金을 授與하였고 1916년에는 恩賜賑恤資金을 給與하였다」라고 記錄되어 있으며 1929年 朝鮮貴族保護施設로서 財團法人 昌福會를 設立하여 朝鮮貴族을 救濟하고 年齡 60才 以上の 勞働能力이 없는 老人 貴族을 待接하였다고 하나 이러한 貴族, 兩班에 局限된 救濟事業은 人道主義思想을 바탕으로 實施하였다기보다는 當時 激化되고 있던 民族 運動을 緩和시키려는 一種의 撫摩策으로 平價하는 것이 더욱 妥當하리라 생각된다.

1944年 3月에는 近代의 老人福祉事業의 始發點이라 할 수 있는 朝鮮 救護令이 公布, 實施되어 極貧者와 無依託者를 救護하려 했으나 解放과 함께 그다지 實效를 거두지 못하게 되었고, 美國을 비롯한 先進國들의 救護活動이 一時에 始作되었으나, 持續적으로 계속되었던, 貧困과 人力의 不足으로 인해 이것 또한 成果가 없었으며 當時 國家的으로 當面한 많은 問題들로 인해 制度的인 體系化도 갖추지 못한 채 散漫한 民間活動으로 그치고 말았다.

6·25動亂을 起點으로 하여 수 많은 戰爭 災害民, 以北으로 부터의 避難民, 戰爭 孤兒들의 發生으로 老人에 對한 關心은 거의 等閑視 되다가 朝鮮救護令을

根幹으로 한 生活保護法이 5·16 革命 直後인 1961年 12月 30日 公布되고 1969年 11月 10日에 그 施行令이 制定됨으로써 老人들을 위한 保護施設인 全國의 養老院들도 이를 根據로 運營되게 되었다.

또한 最近인 1981年 6月에 그동안 몇 차례에 걸쳐 시도되어 오던 老人福祉法案이 비로소 制定됨으로서 施設 保護의 形態도 多角의인 面으로 推進될 展望이 다.

한편 1921년에는 一般的으로 養老院의 嚆矢이라 일컬어지는 聖家 養老院이 天主教 財團에 의해 設立되었고, 以後 1925年 基督教 系統의 愛隣 養老院, 그리고 1927년에 불교계통의 靑雲養老院이 設立되었으며, 1933年 現在 全國의 6個 施設에 58名이 收容되었음이 記錄으로 알려져 있는데 大部分의 施設들이 宗教 團體에 의해 運營되었다고 한다. 그 후 매년 0.8個所 程度의 增加率을 보여 1981年 4月 現在 全國에 地方自治團體에 의한 公立 3個所 사회복지단체에 의한 사립 45개소로 都合 48個 養老院에 3,136名이 收容되어 있는 實情이다.

Ⅲ. 養老院의 實能

-서울 地方을 中心으로-

지금 바깥 세상에서는 「福祉 國家 建設」이니 또는 「老人 福祉」니 하여 한창 요란하나 이들 養老院에 起居하는 老人들은 그러한 巨創한 외침을 듣기에는 너무나 외진 곳에 있는 듯 하다.

그들이 어떻게 養老院 生活을 하고 있는지, 生活保護法이 대체 무엇이며 老人福祉法이 制定되면 그들에게 무슨 도움을 가져다 줄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 關心을 갖거나 알고 있는 이들은 드물다. 다만 「人生의 마무리」에서 그들이 마지막으로 보내다가 가야할 이 조그마한 울타리 속의 하루 하루가 너무나도 지루하고 덧없이 느껴질 뿐이다.

養老院을 한번 訪問하려면 보통 市内에서 버스를 한두시간씩 타고, 게다가 20~30分씩 걸어 들어가야 비로소 老人들을 만날 수 있다. 대개가 中心地에서 벗어난 外廓地帶라 周邊에 人家가 드물고 空氣가 맑아 一見 老人들이 지내기에 매우 適當한 곳일것 같으나 이러한 周邊環境이 그들에게 있어 가장 큰 苦痛인 孤獨感을 불러 일으키는 原因이란 것을 쉽게 느낄 수 있다. 一般的으로 우리 社

會에서 罪를 犯한 경우 犯罪者라하여 一定 期間을 社會와 隔離, 服役을 시키게 된다. 그들에게 주어지는 罪의 댓가가 바로 孤立이라는 점을 理解한다면 이들 養老院들을 社會와 隔離되어 陰蔽된 곳에 둠으로써 收容 老人들에게 「社會的인 죽음」「心理的인 죽음」을 가져다준다는 것 또한 理解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는가. 이들에게 있어 現實的인 悲哀란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싶다.

이들 老人들의 하루 日課를 살펴 보면 이들이 얼마나 단조로운 生活의 굴레에서 허덕이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하루 세 번씩의 食事時間, 그리고 누구나 손수 해야만 하는 빨래, 바느질, 소품정리 등의 늘 반복하는 것 以外에 남은 時間은 방안에서 줄곧 「라디오」나 T·V를 켜놓고 누워 지낸다거나 바깥에 나와 無限定 앉아서 보내는 게 全部이다. 老人들 끼리 모여 앉아 있노라면 별로 할 얘깃거리가 없다. 생각나는 것이라곤 몇 번씩 해버린 것 뿐이고 귀담아 들어 줄 만한 새로운 相對者도 없어 그저 묵묵히 지낼 따름이다. 視線을 잃은 채 表情없이 앉아 있는 이들을 멀찌감치서 보고 있노라면 영 움직일 것 같지 않은 그 모습이 늙음이란 自体에 새로운 서글픔을 느끼게 한다.

지난 歲月을 그 누구보다도 어렵게 살아온 이들의 머릿속엔 많은 생각들이 떠오른다. 6·25事變으로 헤어져야만 했던 血肉에 대한 그리움, 급기야는 이들을 이곳까지 오게 했던 子息들에 대한 안타까움 등 과거의 뼈아픈 記憶들이 아직도 가슴속에 살아남아 이들을 아프게 하며, 또한 죽음에 對한 이런저런 생각들도 늘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다. 아직도 20年前에 헤어진 딸을 찾겠노라 熱望하는 주름투성이의 노파, 老夫婦가 各各 別途의 養老院에 收容되어 離別 아닌 離別을 하고 있는 老人들 여기 養老院에는 아픈 傷處들로 가득하다.

養老院 老人들에게 있어 가장 아쉬운 것 중의 하나는 바로 용돈이다. 용돈이라야 그리 많은 額數를 必要로 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한달에 한두번 정도 市内 구경갈 때의 零錢이나, 가끔씩 먹고 싶은 別食 정도, 그리고 할아버지 들인 경우는 담배가 支給되나 할머니들은 그렇지 못하므로 吸煙을 하는 老人들은 담배 몇 갑을 사피울 정도면 되는 것이다. 그나마 가까운 親知가 있는 경우에는 가끔씩 찾아와서 한방 食口들을 같이 불러

내 준비해 온 음식을 待接하고 용돈을 줄 주는 경우도 있으나 그렇지 못한 大部分의 老人들은 이러한 同僚 老人들이 마냥 부러운 모양이다. 오랜만에 바깥 바람이나 썰러 나가려 해도 이들을 주저 앉게 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이 용돈問題 때문이다. 「어디서 간단한 일거리만 가져다 준다면 消日도 되고 용돈이라도 마련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하는 老人들도 더러 있지만 대개의 老人들이 젊어서 힘든 勞動으로 인해 慢性病인 神經痛 등으로 시달리고 있으며 약 40%가량이 中風, 老妄, 結核, 肢體障礙 등으로 苦痛을 받고 있고 生活에 대한 意慾을 喪失하고 있어 이 또한 여의치 못한 형편이다.

이들이 居處하는 各各의 방안에는 여러 形態의 心身障礙 老人들이 正常 老人들과 混合 收容되어 있어 소위 責任制라고 하여 비교적 健康한 老人들이 이들의 身邊을 도맡아 처리하고 있는데 이들을 돌보아 줄 일손의 不足, 人件費의 不足 등으로 손을 쓸 수가 없다는게 施設側의 얘기이다. 하여간 이러한 混合 收容 形態는 健康한 老人이나 障礙 老人 兩者에 모두가 매우 不便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으며 특히 全体 老人中 약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結核 老人들과 죽음을 앞두고 전혀 起動할 수 없는 老人들을 위하여 隔離室 정도는 따로 마련해 줘야 할 現實이며 일단 老人이 死亡할 時에 따로 安置할 靈安室 등이 없이 이들이 起居하는 방에 며칠씩 같이 두어야 하는 점을 勘案할 때 靈安室 또한 마련해 줘야 할 것이다.

院內에는 아주 基本的인 醫藥品을 除外하고는 醫療施設이나 看護員을 두고 있는 곳이 거의 없어 항상 治療를 받아야 할 一般 慢性病 患者들은 웬만 하면 참고 견뎌야 할 형편이다. 물론 이들에게도 醫療 service는 있다. 定期的으로 該當 保健所에서 찾아와 檢診을 해 주고 있으며, 일단 病이 나면 소위 1.2次 診療 施設이라 하여 指定 病院을 利用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이같은 醫療 惠澤도 事實上 이들에게 크게 보탬이 되지 않는 것 같다. 이들이 病院을 利用할 경우 現實적으로 너무 낮게 配當된 政府의 이들에 대한 治療費로 인해, 病院側 으로부터 매우 우대접을 받게 되며, 또한 이들 老人들 입장에서 指定 病院을 利用하려면 많이 交通費등 其他 經費가 오 히려 많이 들어 차라리 現實적으로 거의 未備한 狀態인 院內의 醫療 施設을 充實히 갖춰 可能한 한 自體的으로 治療를

받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施設側의 얘기이다.

所謂「敬老優待制度」라 하여 이들 收容 老人들도 理髮料, 沐浴費등을 割引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老人들이 隣近 沐浴湯을 실제 利用하려면 매우 어려움이 크다고 한다. 그것은 이러한「敬老優待制度」가 收容 老人들에게 매우 큰 도움을 줄 수 있으나, 그 自体가 法的으로 明文化 되지 않은 勸獎事項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公共 施設 이외의 民間 施設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施設側의 外面으로 인해 몇십명의 老人들이 몇군데씩 돌아 다녀야 하는 때도 있다고 한다. 우선 이들 收容 老人들에게라도 實質的인 도움을 줄 수 있는 措置가 아쉽다.

養老院 老人들의 특징중의 하나는 이들의 거의가 宗教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S 養老院의 경우는 아예 院內에 佛堂을 마련해 놓고 老人들이 利用하게 하



고 있는데, 이들 老人들이 信仰을 바탕으로 한 超越의 價値觀을 가짐으로서 現實生活의 어려움을 克服하려는 心理로 理解할 수 있으나, 事實上 그렇게 까지 절실히 宗教에 깊은 믿음을 가진 이들은 별로 많지 않으며 相當數가 入所後에 단 순히 單調로운 生活의 무료함을 메꾸기 위한 餘暇 善用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점은 主目할만 하다. 이들에게 좀더 깊은 信仰心을 갖게 함으로서 죽음을 눈앞에 둔 그들이 다소나마 心的 위안을 받아 每事에 좀 더 意慾的인 生活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들 老人들은 入所前의 비교적 어려운 環境과 거칠은 生活, 그리고 낮은 學力 수준으로 해서 나타나는 障礙 要素도 많은 것 같다.

우선 意慾의 喪失을 들 수 있는데, 이것은 그들의 健康上의 理由 때문이기도 하나 獨自的인 生活을 하다가 團體 生活

로 바뀜으로 해서 생기는 他人에 對한 依賴心, 養老院에 들어오게 됨으로 해서 「人生의 落伍者」라고 느끼는 심한 劣等 感 등으로부터 비롯된다고 느껴진다. 또한 그들이 自體的으로 可能한 動物飼育, 植物栽培, 讀書등의 취미생활이나 소일거리등에도 關心을 갖지 못하는 것도 바로 이런 理由에서가 아닌가 한다. 실제로 入所前에 生活的인 餘裕를 누린 적이 있었거나, 學力 수준이 比較的 높은 몇몇 特定 老人들만이 항상 이러한 周邊의 소일거리에 關心을 두고 있다는 事實이 이를 뒷받침 해주고 있다.

共同 生活에 대한 適應이 매우 어렵다는 것도 이들의 특징중의 하나이다. 이들은 團體 生活에 있어서 私小한 理解關係로 인하여 다름이 잦은 편이고 同僚 老人에 대한 不滿이 相當히 많은 것으로 느껴지며 一般的으로 느껴지는 心理的인 特性은 보통 老人들과 다를바 없는 것

같으나 한가지 두드러지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듯 「人情 많은 老人像」과는 좀 거리가 있는, 同僚들 간에 극히 利己的인 思考方式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모든 것들을 우선 自己 自身에서부터 시작하여 자기방 食口들, 그리고 비로소 自身들이 속해 있는 養老院 全体 食口를 생각하는 式이다. 이러한 것은 그들이 自身들을 扶養해 줄 家族이 없음으로 해서 自身은 自身이 지켜야 한다는 觀念이, 오래전부터 굳어진 때문인 것 같으며, 事實上 이들이 病이나 기타 理由로 해서 어려운 일에 逢着했을 때 이들을 情誼적도와 줄 수 없는 現實 또한 이를 充分히 納得하게 할 만한 것이다. 그들 위엔 自己 自身조차 가누기 힘든 보통 75~6才의 나약한 同僚 老人들과 항상 돈에 쪼달려 마음뿐인 施設長을 비롯하여 쥐꼬리만한 薄俸에 항상 마음을 두지 못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생각해야 하는 몇몇 施設 從事者들만이 있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즐거운 일이라면 역시 이들 老人들만이 生活하고 있는 單層社會 에 멀다 않고 찾아오는 異那人(?)을 맞이하는 일이다. 우선 自身들을 위해 이곳까지 용케 찾아 준 것이 고맙고 同僚, 老人들이 지켜줘서 들려주지 않던 얘기들을 귀담아 들어줄 수 있는 새로운 相對者를 찾아서 좋은 것이다. 이럴때면 이들은 한동안 잃었던 活氣를 되찾고 얼마간의 술렁임이 있다. 이곳을 찾는 訪問客의 類型은 여러 種類여서 일일이 꼽을 수는 없지만, 올해는 確然히 예년에 비

해 件數가 많이 늘었나 보다. 이것을 순전히 現在 社會 全般에 걸쳐 造成 되고 있는 社會福祉에 대한 關心의 部分的인 結果가 아닌가 생각된다.

이곳에서는 孤兒院이나 기타 收容 施設에서 흔히 볼수 있는 大學生 씨클들의 結緣 團體에 의한 定期的인 訪問을 별로 눈에 띄지 않고 있으나 사흘마다 한번씩 꼭꼭 찾아와 이들을 無料로 보살펴 주는 鍼術師, 매달 한번씩 이들에게 푼돈이나 마 일일이 老人들의 손에 쥐어주고 가는 50代 영감님등 단골도 제법 있다. 대개의 이러한 이들은 餘裕가 있어서라기 보다는 그들의 淸한 生活의 한 部分을 이곳 老人들을 위해 힘겹게 善事하는 사람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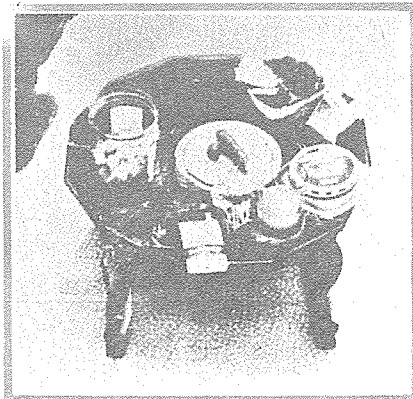
訪問客들 중에는 原來的 意圖와는 달리 오히려 이들에게 累를 끼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가령 힘들여 마련한 善物 꾸러미와 함께 몇시간짜리 發表會를 計劃하거나 또는 젊은이 위주의 힘든 게임 등을 준비하여 이들을 급기야는 괴로하게 하고 귀찮은 感情조차 불러 일으키게 하는, 마치「慰問한다는 名目으로 自身들이 慰勞를 받고 싶어함」이 아닌가 의심이 갈 정도의 一方的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그들로 어떤 施設에서는 이 같은 일들을 防止하기 위해 심지어 訪問 時間까지 定해 놓은 곳도 있다.

年末年始가 되면 訪問客 러쉬가 일어난다. 매스콤들은 그동안 닫혔던 입을 일제히 열어「不遇한 이웃을 돕자」라고 외쳐대며 또한 이때가 되면 社會 여러 團體들이 그들이 訪問할 만한 곳을 찾기에 어려움을 겪는다. 施設側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보통 때에 많이 찾아 주면 좋을 텐데 한꺼번에 몰려와 그들을 모두 다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안타깝다」라고 얘기한다. 이럴 때에 제일 바쁜 사람은 역시 老人들로서 社會 團體, 學生들, 婦人會등 그들이 만나고 또 같이 즐겨줘야 할 各樣各색의 사람들로 인해 차라리 방안에 누워 편히 쉬고 싶은 마음조차 생길 지경이다.

名節이나 年末이 지나면 약속이라도 한듯 人蹟이 뜸해지고 예나 다름없는 靜寂이 찾아오면 이들 老人들은 새로운 쓸쓸함에 젖게 된다. 「꼭 이런 것이어야 하는가」하는 생각이 든다. 이진 分明一年에 한번씩 찾아오는 季節性 流行은 아니어야 하는데 말이다. 不遇 이웃 돕기 계절이란 따로 없다. 언제 어느 때고 이들에게 關心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따뜻한 情이 아쉬운 것이다.

이들과 이웃해 사는 隣近 住民들의 無關心한 態度 또한 理解하기 힘들다. 불과 얼마 되지 않는 거리에서 도대체 養老院이 어디 있는지조차 모르는 이들이 許多하니 말이다. 결코 이웃일 수 없는 이웃들이 養老院 周邊에는 얼마든지 있는 것이다.

이곳에는 가끔씩 特別한 訪問客 들이 찾아 온다. 여기 사는 老人들을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보살피고 있는 院長을 비러 오는 白髮이 성성한 老人들이 바로 그들이다. 아들, 딸, 며느리의 구박에 못이겨 차라리 남은 餘生을 이곳에서 보내겠노라고 며칠씩 찾아 오지만 入所하려면 어렵도 없다. 養老院의 現實은 이들을 받아들일 만큼 餘裕 있는 것이 아니며 그들보다 못한 수많은 無依託 保護對象 老人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항간에는 養老院에 入所하려면 그 入所 節次가 무척 까다로와 이를 簡素化해야 한다는 主張이 있다. 現



在의 規定을 보면 生活保護法에 의해 만 65才 以上の 老人들로서 養老院에 入所하려면 事由가 記載된 戶籍謄本과 住民 登錄 謄·抄本, 無依無託 證明書나 要保護對象 證明書を 添附하여 市, 郡, 邑, 面의 社會係나 福祉係에 養老院 入院申請書를 提出하여 措置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 과정이 까다로운 것을 事實이다 그러나 이렇게 까다로운 節次는 限定된 施設內에서 「꼭 들어와야 할 사람만을 받아야 한다」라는 關係者의 立場과 또한 너무나도 量的으로 모자라는 現在 既存 施設들의 收容 能力을 勘案할 때 어느 정도의 납득이 간다. 節次도 까다롭지만 일단 이러한 節次를 거치더라도 금방 入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보통 1~2年씩 걸린다고 한다.

養老院의 入退所라는 것이 育兒 施設과는 달리 一定 期間을 지나면 入所者들이 外部로 排出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들어오게 되면 별일 없는 한 삶을 마칠

때까지 老人들이 지내게 되므로, 한 사람이 死亡해야만 한 사람이 들어 올 수 있다는 묘한 雙曲線 關係가 이루어 지는 것이 특색이다.

대개 한 養老院마다 年間 십여명 이상, 많으면 定員의 30%를 넘게 老人들이 새로운 環境에 對한 適應度가 낮아 施設入所하는 해에 死亡率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이들이 일단 死亡하고 나면 몇장의 書類와 一人當 20,000원씩의 政府 補助의 葬禮費와 함께 이들의 지루하고 험한 人生 旅程은 모두 끝나고 指定 墓地에 얼마동안 假埋葬 形式으로 묻혀 후시라도 나타날지 모를 緣故者를 기다리게 되는 것이다. 이를 지켜보는 老人들의 心情은 슬픔에 앞서 이미 죽음이라는 한고비를 넘긴 同僚에 대해 漠然한 부러움같은 것을 느낀다고 한다. 그들의 마지막 바람이라는 것은 어찌하면 同僚들에게 구차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또 그들을 고생시켜주지 않은 채 조용히 떠날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이들을 收容하여 保護하고 있는 施設側의 苦哀 또는 한두가지가 아닌 모양이다. 公立인 경우는 全額 地方自治團體의 財政 補助에 의해 運營되고 있으며, 私立 또한 40~60% 정도를 政府 豫算에서 補助받게 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이들 養老院 運營者들이 政府 補助를 除外한 나머지 部分을 담당할 特別한 수입원이 없이 一般 篤志家에 依存하는 실정이라 하며, 따라서 이러한 依存度에 따라 財政 狀態가 施設別로 차이가 많은 편이라는 것이다. 施設들이 資金에 허덕임에 따라 이들은 項目別로 支給되는 政府 補助金を 變則的으로 運用하고 있는 實情으로, 쌀이나 야채 購入費를 施設 修理費로 쓰는 등의 現象이 불가피하다는 한 關係者의 얘기이다. 여하튼「不遇 老人을 돕겠다」는 犧牲者의 精神으로 施設을 運營해 온 이들도 時間이 흐름에 따라 金錢적으로 부닥치는 苦哀로 인해 애당초의 意慾을 喪失하고 있으며, 「이제는 우리도 慈善事業家가 아닌 社會事業家로 인식되어야 한다」며 그들에 대한 社會의 재인식을 當付하며, 「政府에서도 언제까지이고 慈善에 미룰 것이 아니라 이제는 現實的인 財政補助로 뒷받침을 해 주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筆者가 S 養老院을 訪問하였을 때 다른 養老院과 색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그곳은 비교적 財政 狀態가 良好한 편으로 住居 環境이나 食事, 娛樂 施設등이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어 管理者

側에서 얘기하듯, 웬만한 中流 家庭 정도의 수준은 되는 것 같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施設 老人들의 不滿은 자못 심각한 편이었다.* 「여기 老人들은 自己들이 市民 稅金 덕택으로 이렇게 편안하게 지낼 수 있다는 걸 고마와 하기는 커녕 무슨 不滿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다」라며 이들 老人들의 염치없음을 탓고 「얼마동안 여기서 지내다 보면 敬老 思想같은 것은 저절로 사라져 버린다」라고 하는 한 實務者의 얘기를 듣고 있노라면, 施設 老人들을 無感覺하게 대하는 말투며, 그들이 이곳을 하나의 쉬어가는 직장 정도로 여기는 思考方式, 그리고, 乞人行脚이나 行方不明등의 不作用 등을 우려한 나머지 아예 老人들의 바깥 出入을 統制해 버리는 등의 無事安逸主義에 치우친 극히 事務的인 態度, 단순히 衣食住만 잘 解決해주면 되리라는 따뜻한 보살핌이 缺如된 생각들이 바로 이곳 老人들을 不滿스럽게 하는 까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이들 老人들에게 따뜻한 人情이 必要한 듯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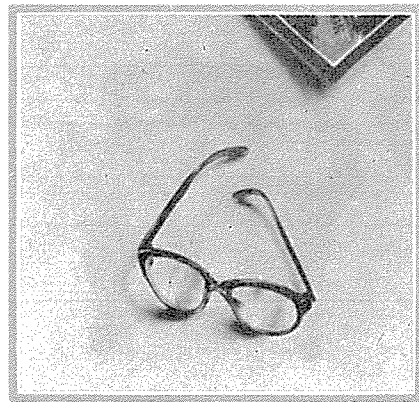
이들은 새로운 環境이나 施設에 대한 適應度가 매우 낮은 편이라 養老院 入所 當時에는 애로事項이 많으나 일단 適應이 되면 점점 滿足度가 높아지는 모양이다. 특히 이들이 生活하고 있는 老朽하고 不合理的한 住居環境에 이들이 그다지 不滿을 느끼지 않고 있다는 데서 그것을 잘 알 수 있다.

그러나 住居環境의 問題點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 施設 自體의 老朽함에 대해서는 일일이 다 말할 수 없다손 치더라도 우선 이들에게 時急한 것은 安全 事故에 對備하는 것이다. 실재는 이곳에서 發生하는 대부분의 事故가 넘어지거나 혹은 떨어져서 생기는 것들이다. 문턱등의 하찮은 障礙物에 의해서도 이들은 生命에 危険을 받기도 하며 더더구나 變두리의 산기슭의 傾斜地에 位置한 경우, 地面의 高低差로 인해 생긴 급한 傾斜路, 계단, 난간없이 세워진 築臺등 無計劃하게 만들어진 通路 部分에는 언제나 이들 老人들을 威脅하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또한 現在 한 방에 7~8명씩, 많으면 10여명이 기거하고 있는 收容室도 매우 狹小하고 人員이 많은 것 같다. 老人들이나 施設側의 얘기로는 대체로 서너명씩으로 生活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한다. 이들이 集團生活에서 서로 상대방을 認識하고 紐帶感을 가져 彼들 나름대로의 家族感을 느낄 수 있는 알맞는 規模

의 人員數에 대한 고려도 있어야 될 것 같다. 外國의 경우에 現在 한 施設當 50~60명으로 人員數를 配定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100~120명 정도의 收容은 매우 無理가 아닌가 생각되어 지는 것이다.

지금까지 직접 現場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綜合하여 記述하였다. 이외에도 言及하고 싶은 것들이 매우 많으나 省略하기로 하며 다만, 우리 社會에서 이들에게 대한 올바른 認識을 갖기를 바라고 싶다. 이들은 울타리 밖의 다른 老人들과 特別히 다른 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들을 둘러싼 周邊 環境의 압박으로 인해 이곳까지 들어 왔을 뿐 彼들 自身은 극히 正常的이며, 따라서 얼마만큼 그들에게 正常的인 生活를 영위하게 하느냐가 重要한 일임을 알아야 한다. 모든 것을 이러한 思想으로 對處해 나 갈 때, 그들의 高질적인 問題인 孤立感의 解消가 어느 정도 可能하리라 여겨지는 것이다.



또한 이제는 이들 養老院들도 法에 明示된 바와 같이 단순한 收容形態에서 벗어나 文化的인 要素를 갖춘 保護의 形態로 바뀌어 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IV. 養老院 — 그 問題點과 對策

養老院의 當面한 果題로서는 우선 施設의 收容 能力의 不足, 老朽化, 障礙老人과의 混合 收容의 解決 專門 從事者의 不足 醫療的인 施設의 未備등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우선 施設의 不足에 대하여 알아보면 現在 우리나라에서는 과연 施設 保護를 해 줘야 할 老人數가 얼마나 되는가에 대한 正確한 調查나 統計가 없는 實情이므로, 1977年 保健社會部 統計資料를 빌리자면, 總老人人口數의 0.6%를 施設 保護의 基準으로 잡고 있어 이 數置를 換算하면 現在 65才 以上の 老人을 146萬名으로 볼 때 8,760名이란 계산이 된

다. 그러나 現段階에서 사실상 施設保護를 해줘야 할 在家保護對象者, 零細民 老人등 現在 國家에 의해 生計保護를 받고 있는 老人들을 합치면 全體 老人의 11.6%에 該當하는 170,000여명으로 대단히 많은 숫자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現在 收容率은 앞서 밝힌바와 같이 1981年 現在 48個 施設에 3,136名으로 全體 老人의 0.22%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外國의 경우를 보면 덴마크, 노르웨이 5.3% 정도이며, 스웨덴이 4.5%, 그리고 핀란드의 경우는 8.6%정도로 대단히 높은 收容率을 나타내고 있으며 가까운 日本의 경우 1.4%정도로 비교적 낮은 收容率을 보이고 있으나 韓國에 비하면 매우 차이가 남을 알 수가 있다. 또한 G.N.P 1,000~1,500 수준의 1~1.5%를 適正線으로 잡고 있음을 비추어 볼 때 施設 收容 能力의 擴張이 얼마나 시급한가를 알 수 있다.

施設의 增加狀態를 보면, 1921年 以後 지금까지 60年 동안 48個所가 設立되어 매년 1個所에도 못 미치며 특히 最近10년간을 볼 때 1971年의 46個所의 收容人數 2,529名에 비해 施設數는 그동안 2個所가 增加한 반면 收容人數는 600名 정도가 늘어나 相對的으로 1施設當 定員數가 늘었다는 얘기이다. 참고로 1980年 現在 託兒施設을 제외한 全國의 兒童 施設이 327個所는 28,191名을 收容하고 있으며, 더구나 全體 兒童의 數가 總人口數에 비해 매년 감소하는 반면 老人人口의 數가 增加 추세임을 감안할 때, 老人 施設의 擴張은 시급한 과제이다.

養老院들은 認可를 받을 當時 特性에 適合하게 建築한게 아니라 대개가 一般 家庭집을 利用하여 施設 認可를 받았기 때문에, 近來에 세워진 몇몇 施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老人들이 居住하기에 不適合하여, 또한 集團 生活에 대한 考慮가 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最高 60年에서 20년이 지난 것들이 全體의 半數를 넘게 차지하고 있어, 각 部分的인 老朽와 問題點들을 일일이 열거 하기 힘든 형편이다.

現在 施設에 대한 法的인 根據는 1961年에 制定된 生活保護法 25條 및 27條와 1969年에 制定된 生活保護法 施設設置基準令에 두고 있으나, 사실상 이 自體가 有名無實한 실정이며, 老人福祉 收容施設에 관한 獨自的인 施設基準이 마련된다 하더라도 現視點에서 그것이 잘 지켜질지가 의문시 된다. 여하튼 政府의 補助에 의해 部分的인 補修를 하고 있으나

今後의 建築에 있어서 老人의 特性을 考慮한 充分히 根據있는 基準을 研究, 마련하여 全体 施設에 대하여 一貫性 있는 補修 및 新築, 増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現在 우리나라에는 無依無託한 老人들로서 65才 以上の 貧困한 者를 對象으로 養老院에 收容하고 있는 實定이나 健康 狀態에 따른 施設의 分類는 無視되고 있다. 따라서 分体 老人의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障碍老人의 分離收容이 시급히 解決되어야 하며, 특히 各 施設當 平均 3~5名씩 차지하고 있는 結核患者들은 保健所에서 定期的으로 投藥을 하고는 있으나 이들을 隔離, 收容할 隔離室이 없으므로 해서 점차 結核患者가 늘어나는 點은 빨리 解決해야 할 問題인 것 같다.

한편, 養老院 老人들의 現實의인 面에서의 가장 問題視 되는 點이 社會的 孤立에 따른 孤獨感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解決策이나 論難이 한번도 提起되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의 養老院에 대한 기존 政策과 一般의 認識이 이들을 구석진 곳에 隔離시켜야 한다는 收容所의인 性格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를 當然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데, 1960年 以後 外國에서는 이들 養老院을 住宅地 內에 設置하도록 許可 基準을 定하여 實施하고 있다고 하며, 그 主要한 意圖는 收容老人에 對해 隔離狀態가 아닌 地域 住民과의 交流를 勸奨함으로 해서 이를 老人들에게 社會의 落伍者라는 劣等感에서 탈피하게 하여 그들이 住民의 一部라는 의식을 갖게 해서 이발소, 목욕탕, 식당, 진료소 등 一部 施設들을 低廉한 價格으로 利用하게 함으로 해서 相互 "give and take"에 立脚한 共感帶를 形成하는 所謂 "community development, community care"가 바로 그것이다. 여하튼 關係者들은 老人들의 孤獨感을 解消시킬 수 있는 根本的인 對策을 講究해 봐야 할 것이다.

現在 우리나라에는 社會福祉, 특히 老人福祉施設 從事者에 있어 전문가가 全無한 狀態이다. 短期間의 教育을 통해서 「社會福祉從事者資格證」이란 것을 發給하고 있는 形편인데, 現在 全体 養老院에 總 288名의 從事者가 근무하여 收容人 10.8名當 1名꼴이 되며, 그 中 이들 有資格者는 從事者의 10% 미만에 그치는 셈이다. 日本이 1977年 現在 施設當 平均 1.9名當 1.9名이며 收容者 2.8名當 1名인 것에 비교하면 施設從事者

의 確保에 關한 問題가 얼마나 시급한가를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收容老人에 대한 醫療惠澤 問題인데, 1977年 1月 1日부터 實施된 醫療保險制度로 收容老人들도 醫療保護 對象者로 惠澤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또한 生活保護法, 醫療保護등에 根據할 수 있으나 現實의으로 볼 때 施設의 地域的인 問題, 다시 말해서 病院이나 保健所의 거리가 너무 멀어 交通費나 醫師 往診料등이 治療費보다 오히려 더 들게 되고 老人들이 慢性病이 많아 지속적인 治療를 要함으로 해서 現在로서는 全無 狀態인 施設內의 醫療設備를 갖춰 可能한 한 院內에서 解決하는 方案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以上에서 現在 當面한 몇가지 問題點을 들어 보았으나 보다 根本的인 것은 現實的 諸問題들을 뒷받침 해 줄 수 있는 財政的인 補助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껏 老人福祉에 投資한 政府의 比重은 全國 48個 養老院에 대한 運營資金 補助와 生活保護法에 依據하여 居宅保護 對象者中 老人들에 대한 生計 유지비 정도가 全部인 實情으로, 이것은 G. N. P의 0.7%에 해당하는 社會福祉 分野의 一部인 것이다. 그나마 老人福祉 分野는 타分野에 비해 매우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는 老人들이 이미 經濟的 役割 喪失로 非生產的 部類에 속한다는 認識으로 인해 나타나는 政策的인 結果로 여겨진다. 자라나는 兒童들이 장차 社會에 充分히 기여할 수 있으므로 保護 育成되어야 한다면, 老人들 또한 이미 社會에 기여한 댓가로 의당 國家로부터 保護를 받아야 할 權利가 있지 않은가 생각된다. 老人에 대한 恭敬의 美德을 들어 老人問題에 있어 별 問題가 없다고 여기고 있으며, 政策上으로도 家宅保護에 重點을 두어, 施設保護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금번에 制定된 老人福祉法案에 老人들의 財政과 健康에 따라 나눈 몇가지 保護施設의 明文化에도 매우 苦哀이 따랐다는 關係者의 뒷얘기이다.

오늘날 이러한 保護施設이 多樣化 된 先進國에서도 과거에 뿌리 깊었던 傳統的 秩序가 產業化의 여파로 인해 점차 變質되어 오늘날에 이르렀음을 감안할 때 언젠까지나 傳統的인 美德에만 그쳐서는 안된다.

老人福祉 行政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는 行政組織이 分化되어 老人만을 위한 全擔 機構가 設置되어야 한다. 日本

에서는 厚生省 산하에 社會局이 있어 여기에는 老人福祉課와 老人保健課가 各各 分化되어 있으며, 美國에서도 1965年 老人福祉法에 의하여 保健, 教育福祉省 (Department of Health Education and Welfare)內에 "Administration on Aging"이라는 機構를 두고 老人福祉에 대한 問題를 全擔시키고 있는 反面에,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行政上의 分化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結果로 責任所在의 不明確性, 責任 回避性, 責任 轉嫁 傾向등 여러가지 矛盾이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福祉 行政 要員들에 있어서도 이 分野를 專攻한 전문가를 養成하여 實務를 담당하게 해야겠으며, 經濟的 安定策으로 國民福祉 年金 制度가 조속히 實現되어야 하며 停年制度에 適用되지 않는 老人들을 위한 就業을 알선해 줌으로서 生計 保障에 도움을 주도록 해야 한다. 또한 老人들에 알맞는 老人住宅의 標準 模型을 研究하여 이를 권장해야 하며, 教育, 文化, 娛樂등에 대한 多樣한 program의 開發을 서두를 것이며, 이러한 諸分野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研究機關을 育成을 補助해 줘야 한다. 日本에서는 最近 10年間 老人問題에 대해 상당한 成果를 거두고 있으며, 1978년 한해동안에 이와 關連한 200여편의 主要한 論文들이 發表된 바 있으며, 東京老人問題研究所에서는 1975年度 研究費支出額이 80億엔에 달하였다고 한다. 美國의 國立 老人研究所의 研究費 豫算 또한 1978年度에 3,700萬弗에 달하는 엄청난 숫자였으며, 英國이 國家 財政 狀態가 넉넉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世界에서 가장 모범적인 老人福祉 國家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1940年度부터 老後 保障制度의 確立을 위해 꾸준한 研究를 해온 덕분이라고 한다. 이에 비해 現在 몇몇 學者들이나 民間團體에 의해 간헐적인 研究로 그치는 現實을 생각할 때 심한 격차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老人福祉에 關한 問題點들은 이 외에도 매우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重要한 것은 國家의 老人福祉에 대한 意志와 老人에 대한 國民들의 關心임을 두말할 나위도 없겠다.

끝으로 老人問題는 特定 部類에 局限된 일이 아니라 우리가 언젠가는 한번씩 부딪칠 必然的인 것임을 강조하며 글을 맺는다(*)